

『올해의 K-스타트업 2026』 스포츠리그 예선 스포츠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

「올해의 K-스타트업 2026」 부처통합 창업경진대회의 예선 리그인 ‘스포츠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K-SPORTS BOOSTER PROGRAM 아이디어 공모전)’의 참가자(팀)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대회 개요

□ 목적

- 스포츠산업분야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를 발굴·육성하여 「올해의 K-스타트업 2026」 본선 진출을 지원하고, 스포츠산업 혁신 및 미래 일자리 창출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

□ 운영주체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국민체육진흥공단

□ 지원대상

- 스포츠산업 분야 창업기업(업력 3년 이내)
※ 통합공고일(26.03.27) 기준 업력 3년 이내이며,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 기업

□ 선정규모

- 서류평가를 통해 20개팀 선발
-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5개팀 선정
→ 최종 선정된 5개 팀은 「올해의 K-스타트업 2026」 본선 진출 추천 대상 기업으로 연계 지원

2

모집 부문 및 참가 자격

□ 모집 부문

- 스포츠 산업 분야의 독창적인 창업 아이디어(아이템)

세부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스포츠 테크 및 장비 (스포츠용품, 스마트 장비, 기능성 의류, IoT 결합 하드웨어 등) ② 스포츠 콘텐츠 및 서비스 (스포츠 교육 플랫폼, 데이터 분석 솔루션, 미디어 콘텐츠, O2O 서비스 등) ③ 스포츠 사회적 가치 및 기타 (ESG 경영 관련 아이디어, 소외계층 스포츠 복지 등)
-------	---

※ 접수 시, 해당 분야 선택

※ 단, 단순 시설 건립 및 운영 관련 아이디어는 제외하며, 시설 운영의 효율을 높이는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은 지원 가능

□ 참가 자격 및 제외 대상

- (참가자격) 올해의 K-스타트업 2026의 공통 참가 자격을 준용

< 올해의 K-스타트업 2026 참가 자격 >

공통기준 (판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공고일('26.3.27.)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단 '26.4.27. 이전까지 창업 시 창업기업으로 인정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창업이력 제외 사항) 아래 ①~③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③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div>
구분	세부자격
창업기업 대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이면서,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자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단 '26.4.27. 이전까지 창업하고,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인 경우 참가 가능 ※ 공동대표, 각자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이 대회 참가자격.참가제외 기준을 충족해야함 ※대회 신청기업 외 보유 사업자가 있을 경우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이어야 함

- (제외 대상) 참가 제외 요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

< 올해의 K-스타트업 2026 참가 제외 요건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
-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올해의 K-스타트업 왕중왕전 2016 ~ 2025” 기 수상자(팀장 또는 대표자) 또는 수상 아이템 (왕중왕전 특별상·입상자 제외)
- 통합공고일 기준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최근 3년간(2023~2025) 他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 받은 자
 - * 他 창업경진대회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부문에서 주최한 모든 ‘창업경진대회’와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포함
 - *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한정하며, 기술개발, 실증 등 사업화 목적의 지원금과는 별개
 - * 예비창업팀의 경우 ‘팀장’(팀원제외), 기 창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창업기업’ 수상 내역 확인
- '26년 행정안전부 주최 「범정부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에 동일·유사한 아이템으로 진출한 자(팀)
 - * 아이템에 적용된 핵심기술과 사업BM, 목적 및 지향점을 종합적 판단
- 대회 참가 신청 아이템 및 기업이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거나 침해 관련 소송 등의 재판 진행 중인 자(기업) 또는 아이템

* 대회 운영 중 참가 제외 요건 적발 시 즉시 대회 참가가 제외 될 수 있음

3 신청 및 접수

□ 신청 및 접수 개요

- (신청기간) 2026.4.27.(월) ~ 5.25.(월) 16:00까지
- (신청방법) 스포츠창업 공모전 홈페이지(<http://sportsbooste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참가 신청 전 회원 가입 필수이며, 대표자가 가입 후 직접신청
- (제출서류)
 - ① 참가신청서(별지1 참조)
 - ② 참가서약서(별지2 참조)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3 참조)
 - ④ 사업계획서(별지4 참조)
 - ⑤ 참가 자격 증빙서류 (붙임 1 참조)

4 세부일정 및 절차

□ 주요 일정

< 스포츠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절차 >

모집공고	서류평가	고도화 멘토링	발표평가	시상식 및 통합본선추천	본선진출자 대상 멘토링
창업리그* *3년 내 창업기업	사업계획 평가 (20개팀 선발)	사업계획 고도화 (20개팀 대상)	IR DECK 평가 (5개팀 선발)	시상식 및 올해의 K-스타트업 본선진출 (5개팀 대상)	본선진출자 맞춤형 멘토링 (5개팀 대상)
4월~5월	5월	6월	7월	7월	8월

-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일정 및 장소는 추후 공지
- ※ 멘토링 프로그램 필수 참가

- (서류평가) 20개팀 선발
- (고도화 멘토링) 서류평가 통과된 기업 대상,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서 멘토링 등 제공

구 분	목 록
사업계획서 멘토링	· 특강: 평가지표에 따른 사업계획서 구성하는 법 · 멘토링: R&D, BM, 성장전략 등 보완이 필요한 이슈 중심 기업별 1:1 멘토링

※ 멘토링 프로그램 구성은 변경될 수 있음

- (발표 평가) IR피칭을 통한 5개팀 선발
- (본선진출자 대상 멘토링) 5개팀 대상 맞춤형 심화 멘토링 진행
- 강·약점 분석을 통해 고득점을 위한 전략 수립 및 강화 목표

구 분	목 록
IR 스토리라인 고도화	· 창업 아이템 문제정의 명확화, 차별성 중심 스토리 재구성 · 올해의 K-스타트업 평가항목(PSST) 기반 발표 구조 정리
IR 피칭 트레이닝	· 발표 스크립트 및 전달방식 코칭 · 발표 시간 관리 및 핵심 메시지 전달 훈련 · 심사위원 예상 질문 도출 및 대응 논리 정리 · 모의 IR진행
선배 수상팀 연계	· 선배 수상팀과의 네트워킹 및 1:1 멘토링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구성은 변경될 수 있음

- (공모전 시상식) 스포츠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 (올해의 K-스타트업 본선 진출 추천) 5개팀 본선 진출

5 평가 및 시상

□ 평가 내용

- (평가항목) 기술성·사업성을 바탕으로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PSST 방식)

< 서류평가 지표(안) >

구분	평가지표	배점	
		서류평가	발표평가
문제인식	- 창업 아이템 개발 배경 및 필요성 - 목표시장 및 고객 정의의 적절성	20	20
해결방안	- 창업 아이템 구현 수준 및 완성도 - 창업 아이템 실현(구체화) 방안 - 기존 대비 차별성 및 기술적 우위 - ESG 가치 반영 여부	30	30
성장전략	- 시장 진입 및 확장 전략의 타당성 - 수익모델의 명확성 및 실현 가능성 - 사업화 추진 계획의 구체성 - 자금 조달 계획	30	35
팀구성	- 대표자 및 팀 역량 - 관련 경험 및 실행력 - 외부 협력 가능성	10	15
스포츠 연관성	- 스포츠 산업과의 연관성 - 스포츠 분야 내 활용 가능성 및 확장성	10	-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동점자 처리기준: 평가항목의 상위항목에서 하위항목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발대상)

- 서류평가: 20팀 선발
- 발표평가: 5팀 선발

□ 시상내역

- (시상훈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상 4점
- (시상내역) 5개팀 대상 총 1,800만원 포상

< 스포츠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규모(안) >

구분	훈격	시상수	상금
최우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	600만원
우수상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상	2	400만원
장려상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상	2	200만원

○ (특전)

- 전체 5팀 올해의 K-스타트업 통합 본선 진출권 부여 및 대응 지원
- 최우수상 및 우수상은 '27년 예비초기(도약)창업지원센터 보육기회 제공 예정(사업화지원금 평균 45백만원* 지급, 지원금의 10% 본인부담 의무)
- * '26년 기준이며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지원금은 변동 가능
- 장려상은 '27년 예비초기(도약)창업지원센터 지원 서류평가 면제
- 수상기업은 SKL(스포츠코리아랩) 입주기업 지원시 가점부여
- 기타 '27년 공단지원사업 신청시 추가 가점부여 적극검토

6 문의처

□ 스포츠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문의처

- 스포츠산업 운영사무국
 - Tel) 02-3475-7792
 - E-mail) dv-biz@daraebiz.com

7 유의사항

□ 유의 사항

- 모집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은 본 경진대회 신청자에게 있음
 - * 각 예선리그별 참가자격, 모집기간, 접수처, 제출서류 등이 상이하니 세부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후 참가 신청
- 동 경진대회 공고문과 관련 규정 위반사항 또는 사업계획서의 허위 기재·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상금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제40조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와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및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동일 또는 유사한* 창업아이템으로 다수 예선리그에 중복신청은 금지하며, 중복신청 시 통합본선 진출이 제한될 수 있음
 - * 아이템에 적용된 핵심기술과 사업BM, 목적 및 지향점을 종합적으로 판단
 - 다른 아이템으로 중복참여 하였을 경우에는 통합본선 진출 시 1개의 창업아이템을 선택하여 진출해야 함 ※예선리그 중복추천 불가
 - ※ 예선리그별 참가 신청을 위한 창업아이템 수, 중복참여에 관한 세부내용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 또는 참여(후원 제외)하는 他 창업경진대회에 동일·유사한 아이템으로 중복수상 불가
- 기(既) 창업한 팀원 또는 타인의 창업아이템으로 대회 참여 불가, 해당사항 적발 시 탈락될 수 있음
- 임금체불, 세금 체납,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보호 및 보안 관련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팀) 본인에게 있음
- (지식재산권 보호) 왕중왕전에서 공개한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야 함
 - * 아이디어가 출원 전에 공개된 경우, 공개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디자인은 6개월 이내) 공지 예외 적용 주장을 통해 출원 가능

< 아이디어 공지 예외 주장에 관한 공지 >

출원인이 행한 공지행위로 인해 특허 출원 시 거절이유에서 제외되는 제도로 아이디어 제공자는 아이디어가 공지 또는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또는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에 따라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으며,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보호법」 제51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에 따라 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음

- (기술자료 임치제도) 핵심 기술 및 경영정보를 신뢰성 있는 기관에 보관하고, 분쟁 발생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및 보유 사실 입증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관련 서비스 이용(유료)할 수 있음

< 기술자료임치제도 관련 법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①수탁·위탁기업(수탁·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任置)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은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수치인"(受置人)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임치기업"이라 한다)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아이디어 소유권자, 원본존재 및 보유 시점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영업비밀 보호센터(한국지식재산보호원)를 통해 관련서비스 이용(유료) 가능하며, 통합본선 진출팀 대상으로는 무료 서비스 제공
 - * 원본증명서비스 조기소진 시 지원종료 될 수 있음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관련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증명) ①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이하 "전자지문"(電子指紋)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

- (비밀준수) 올해의 K-스타트업 2026 통합본선 진출팀의 아이디어는 운영기관의 보안규정, 평가위원의 보안서약 등을 통해 비밀유지

< 비밀준수 관련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차목 ①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선행기술조사) 수상자와 타 특허권자의 분쟁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왕중왕전 진출팀(30개팀)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가 왕중왕전 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붙임 1 제출 및 증빙서류 안내

구 분	목 록	비 고
자격요건 증빙서류 (필수)	① 창업기업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 가린 후 제출
	② 대표자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 통합공고일('26.03.27) 이후 발급본 - 공동·각자 대표인 경우, 공동·각자 대표자 서류 포함하여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 사실증명원내 보유 사업장
	④ 폐업사실증명원	- 대표자 사실증명원내 폐업 사업장
	⑤ 4대보험 가입자명부	- 팀원증명용 - '26.04.27 이후 발급본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통합공고일('26.03.27) 이후 발급본
	⑦ 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부동산임대업 보유자 한정
기타 증빙서류 (선택)	① 매출 :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 사업계획서 내 매출, 수출, 투자, 고용, 지재권 실적 작성한 경우, 해당 증빙서류 제출
	② 수출 : 수출실적증명원, 수출계약서 등	
	③ 투자 : 투자계약서(투자금액 포함), 주주명부 등	
	④ 고용 :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⑤ 지재권 : 특허증, 실용신안증, 디자인증	

※ 자격 증빙을 위한 모든 서류는 통합 공고일(2026.3.27.) 이후 발행분에 한해 인정

※ 접수 마감까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

※ 폐업사실 증명원, 창업기획 확인서 등 서류 발급에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공고 확인 후 즉시 준비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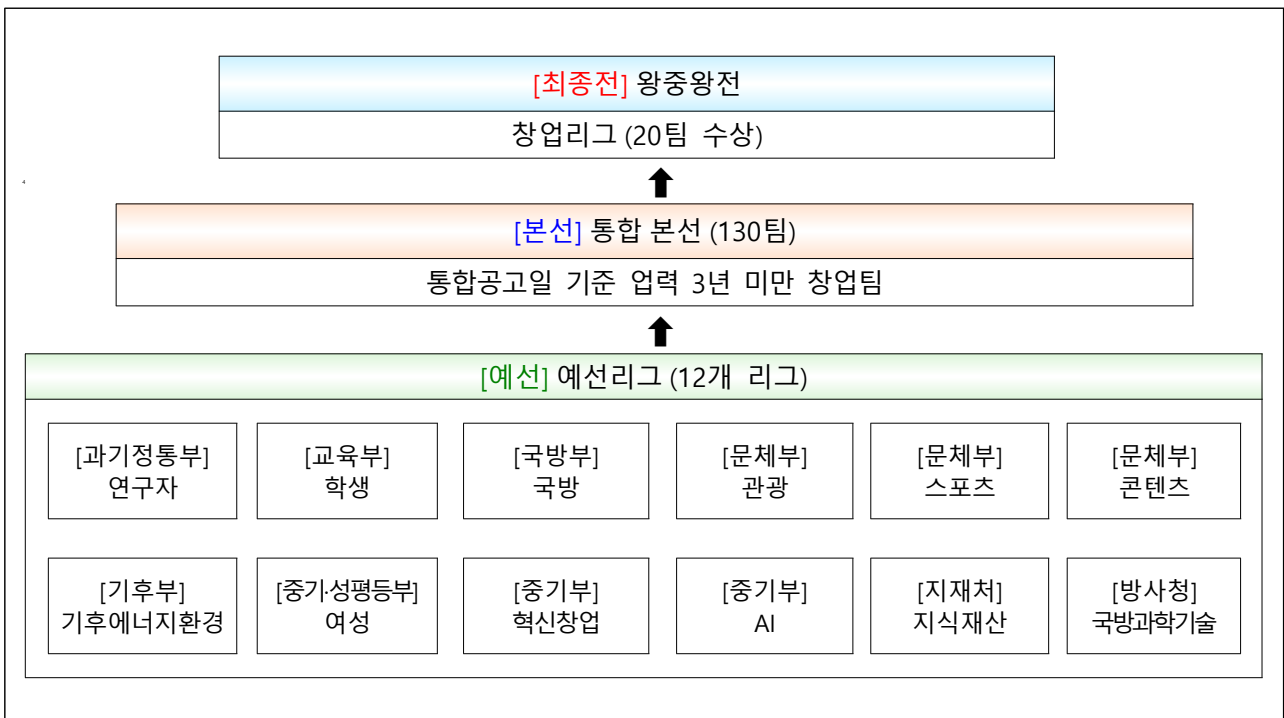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및 문의가 폭주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청 요망

붙임 2 올해의 K-스타트업 2026 운영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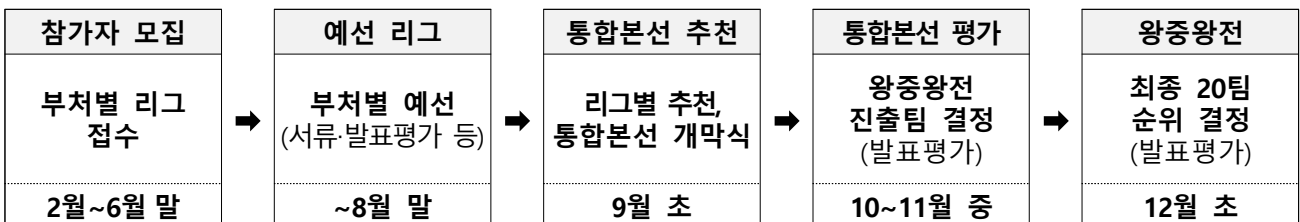
- **(목적)** 범부처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유망한 창업팀을 발굴·포상하여 親창업분위기 확산
- **(대회 운영 방식)** 참여 부처별 예선리그를 거쳐 우수 참가팀을 선발·추천하고, 통합본선*과 왕중왕전 평가를 통해 최종 수상자 선정

* 통합본선 단계부터는 진출팀 기 창업 여부(통합 공고일 기준)에 따라 진출팀 추천

< 올해의 K-스타트업 2026 운영 체계 >



□ 대회 운영 일정



* 대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예선리그별 세부 공고문 확인 필요

< 2026년 주요 변동사항 >

구분	기존 ('25년)	변경 ('26년)
대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전! K-스타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해의 K-스타트업
참여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기부, 과기부, 교육부, 국방부, 문체부, 기후부, 성평등부, 국토부, 지재처, 방사청 (1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기부, 과기부, 교육부, 국방부, 문체부, 기후부, 성평등부, 지재처, 방사청 (9개)
참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 이내 창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내 ** 국방리그에 한하여 예비창업자(팀) 지원 가능 ※ 참가대상 변경에 따라 대회 명칭을 “도전! K-스타트업” → “올해의 K-스타트업”으로 변경
대회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선리그(1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리그(문체부)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선리그(1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리그(중기부) 추가 - 부동산신산업리그(국토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출규모) 225팀 - (운영) 예비창업리그·창업리그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출규모) 130팀 - (운영) 구분 없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왕중왕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출규모) 30팀 / (수상규모) 20팀 - (평가운영) 공개 발표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왕중왕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출규모) 20팀 / (수상규모) 20팀 - (평가운영) 좌동
참가자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창업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장) 통합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 (팀원) 통합공고일 기준 보유 사업자가 모두 7년 이내인 자 창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통합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이면서,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 이하 창업기업 대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대표·각자대표 모두 자격 충족 ** 대회 신청기업 외 대표자 보유 사업자가 있을 경우 모든 사업자가 업력 7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통합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이면서,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 창업기업 대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26.4.27. 이전까지 창업하고,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인 경우 자격 인정 ** 공동대표·각자대표 모두 자격 충족 *** 대회 신청기업 외 대표자 보유 사업자가 있을 경우 모든 사업자가 업력 7년 이내 <(국방리그 한정) 예비창업자(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리그에 한하여, 예비창업자(팀) 참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장) 통합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div>

※ 지원내용

1 투자자 · 참가팀 네트워킹 기회

- 통합본선 진출팀(130팀) 대상 투자유치 기회 확대*, 참가팀 간 교류·협력 증진 등 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킹 기회 지원

* 통합본선 간 투자심사역 평가 참여, 투자 멘토링 등 지원 예정

2 상금 및 상장

- 왕중왕전 총 상금 8.9억원(최대 5억원) 및 대통령상 등 상장(20점) 수여

※ 올해의 K-스타트업의 공식적인 수상팀은 '대상' ~ 'TOP 20' 수상팀을 의미

< 올해의 K-스타트업 2026 왕중왕전 시상규모 >

창업리그		
구분	훈격	상금
TOP 1(대상)	대통령	5억원
TOP 2(최우수상)	국무총리	1억원
TOP 6(우수상)	과기정통부장관	각 5천만원
	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문체부장관	
TOP 10(장려상)	기후부장관	각 1천만원
	성평등부장관	
	지재처장	
	방사청장	
TOP 20(특별상)	중기부장관	각 5백만원

* 상금 규모는 세금 포함

** 수상팀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특별상에 해당(후속 연계 지원 '수상팀' 반영)

※ 상격, 훈격 및 상금 규모 등은 대회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3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부도/파산 - 2년 초과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창 업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 업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업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